

FY 2006 보험산업발전 정책 세미나

예금보험제도의 현안과제 및 개선방안

이 순 재

(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)

June 8, 2006

목 차

- 연구 배경
- 예금보험제도의 운영과 현안과제
-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
- 결론

I. 연구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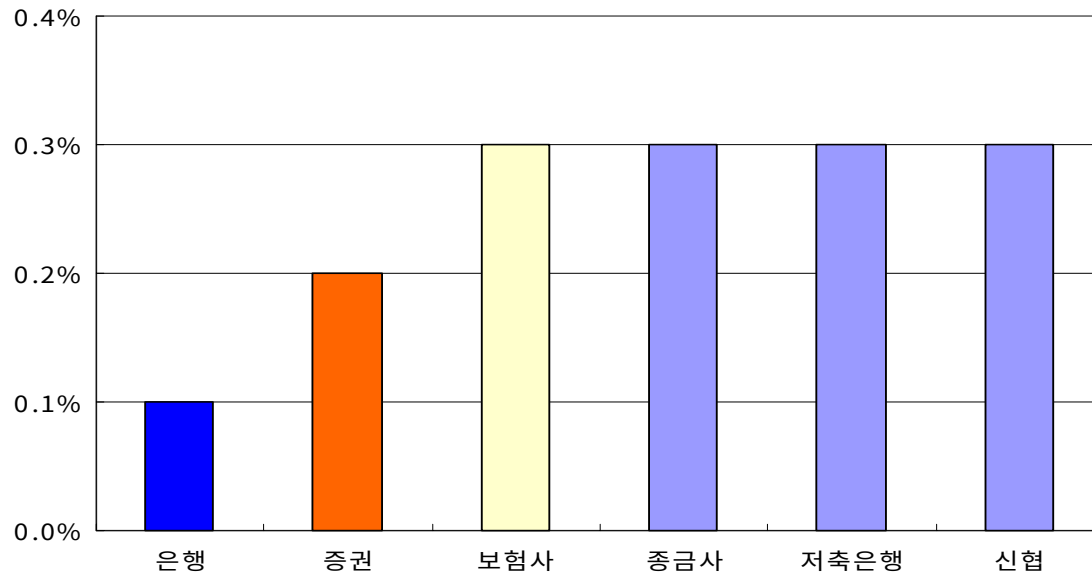
- 기금통합 이후 예금보험제도상의 문제 노출
 - 보험요율체계
 - 보상한도 수준
 - 기금적립방식
 - 운용주체의 자율성
- 정합성, 합리성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 필요

Ⅱ. 현안과제 - 요율체계

- 보험요율 산출기준

➤ 보험권은 은행 등에 비해 과도한 요율 수준

< 금융권역별 예금보험요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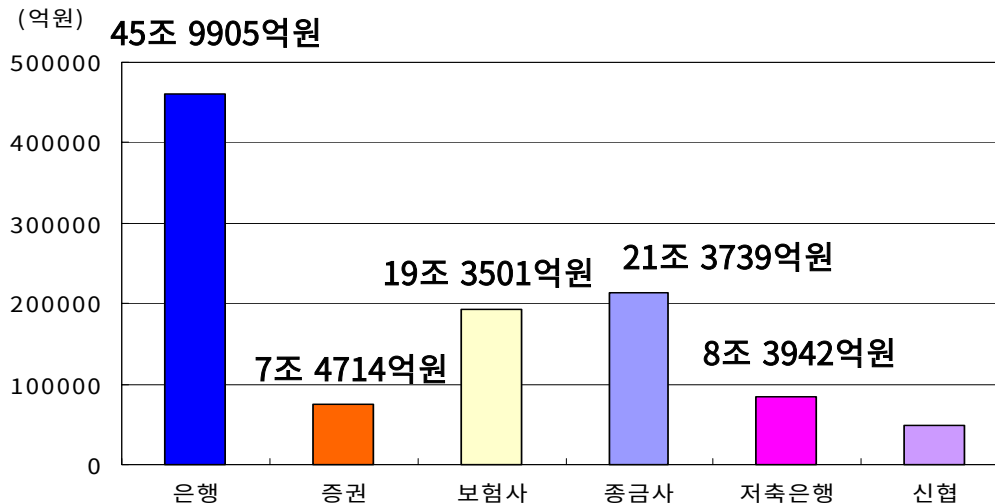


Ⅱ. 현안과제 - 요율체계

- 보험요율의 산출기준

➤ 보험권에 비해 은행의 경영 및 재무상태 부실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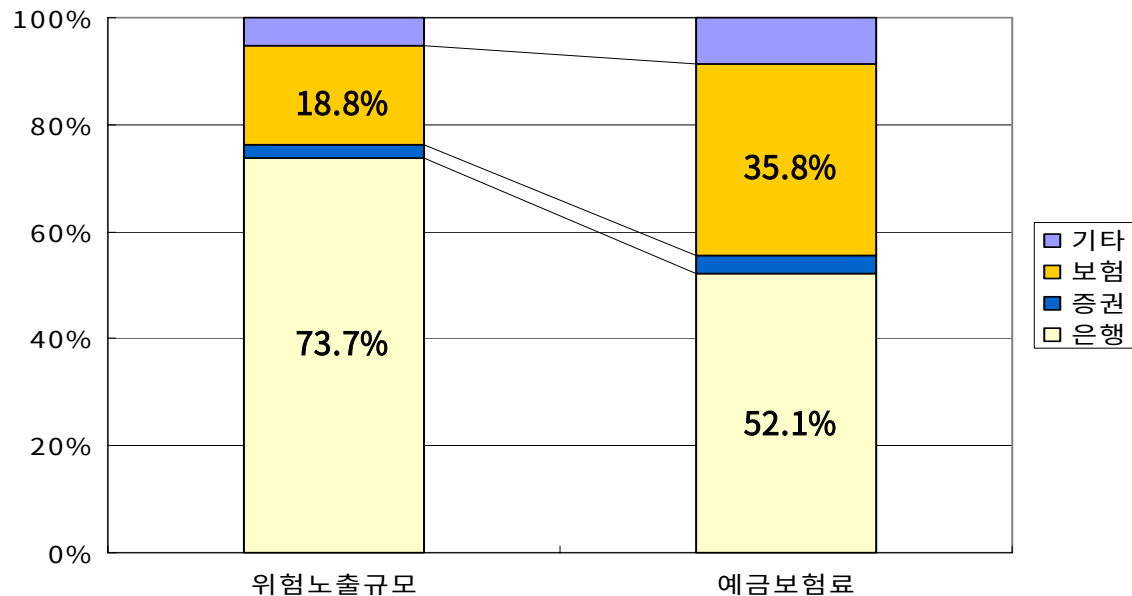
< 금융권역별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 투입현황 >



Ⅱ. 현안과제 - 요율체계

- 노출위험 대비 예금보험료

- 보험권은 노출위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한 보험료 납부
- 보험권 노출위험 : 18.8% , 예금보험료 납부액 : 35.8%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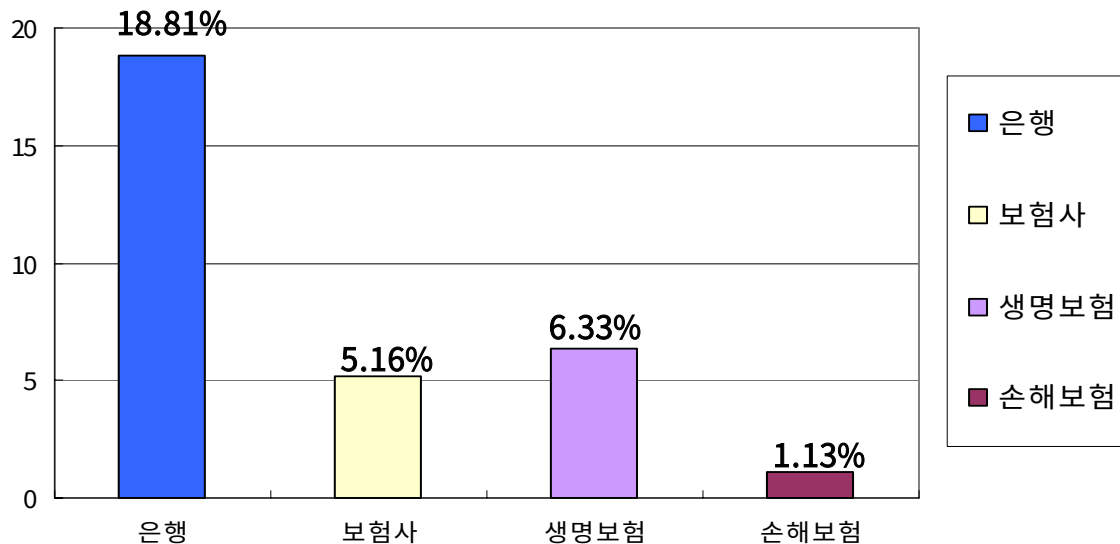
주) 2004년 기준임

Ⅱ. 현안과제 - 요율체계

- 노출위험 대비 예금보험료

➤ 보험권의 손해율 지수는 은행권의 1/3에 불과

< 보험권과 은행권의 손해율 지수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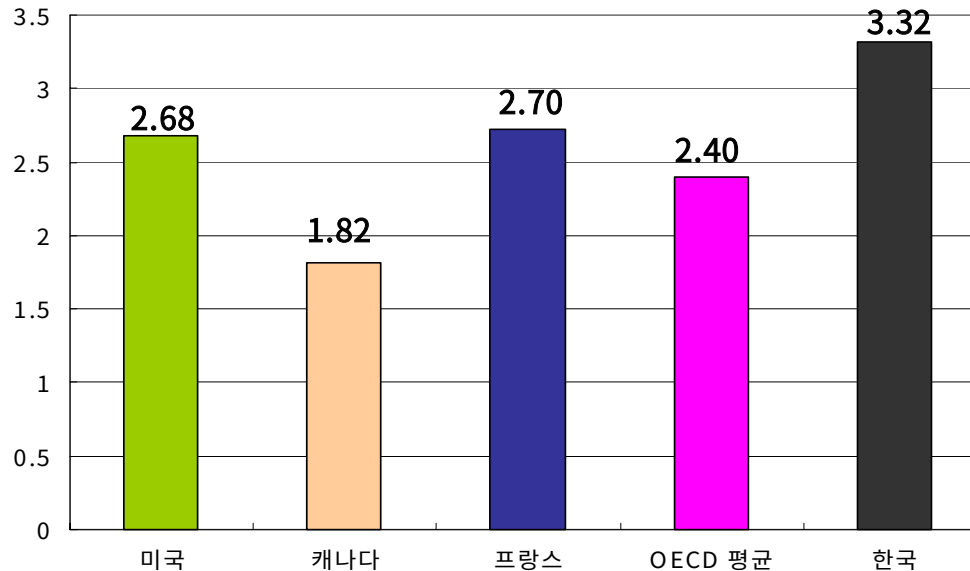


주) 98년 ~ 04년 실적임

Ⅱ. 현안과제 - 보상체계

- 1인당 GDP 대비 보상한도 (해약환급금 기준)
 -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장규모 월등
 - OECD 평균 : 2.40배, 우리나라 : 3.32배

< 주요 국가의 GDP 대비 보상비율 >



II. 현안과제 - 보상체계

- 금융권역별 보상한도 : 국가별 비교 (보험금 기준)
 - 보험권의 보험금기준 보상한도 > 은행의 보상한도

구분	은 행	생명보험	손해보험
일본	정액보상한도 천만¥	비율보상 90% (한도없음)	비율보상 90% (한도없음)
미국	정액보상한도 10만\$	정액보상한도 30만\$ (사망급부금) 10만\$ (해약환급금)	정액보상한도 30만\$
영국	2천 £ 까지 : 100% 3만 3천 £ 까지 90% (한도:3만5천 £)	생명보험, 연금 : 2천 £ 까지 : 100% 초과분 : 90%(한도없음)	의무보험 : 100% 일반보험: 2천 £까지 100% 초과분은 90%(한도없음)
한국	정액보상한도 (5천만원)	정액보상한도 (5천만원)	의무보험 : 100% 일반보험 : 정액보상한도 (5천만원)

Ⅱ. 현안과제 - 보상체계

- 금융권역별 보상한도 : 보험요율 대비
 - 기금통합 이후 권역간, 예금자/계약자간 보조금 지급현상 존재

< 금융권역별 예금자 보호기금 >

구분	보험요율 변화		보장한도 변화		보험료대비 보장비율
	통합이전	통합이후	통합이전	통합이후	
은행	0.03%	0.1%	2천만원	5천만원	75%
보험	0.15%	0.3%	5천만원	5천만원	50%
증권	0.15%	0.2%	2천만원	5천만원	187.5%

Ⅱ. 현안과제 - 보상체계

- 제3자 배상책임 기금은 통합 예금보험기금의 제도적 경직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
 - 예 : 손해보험협회에 추가로 기금설치
- 현행 기금에서는 5,000만원 보상한도를 초과한 추가지급을 적용할 수 없음에 따라 사후각출방식의 별도 기금이 설치

Ⅱ. 현안과제 – 기금적립방식

- 사전적립방식 채택국가는 목표기금제 병행
 - 국내 적립방식의 취약점은 목표적립률의 부재

	적립방식	목표기금
미국	사후각출	없음
영국	사후각출	없음
일본	사전적립	있음
프랑스	사전적립	있음
한국	사전적립	없음
노르웨이	사전적립	있음

Ⅱ. 현안과제 – 운영주체의 자율성

-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제도의 개선 필요
 - 예보의 적기시정조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 필요
- 예금보험위원회의 구성방식의 자율성 결여
 - 금융산업 각 권역의 대표성 있는 위원의 참여 미흡

Ⅲ. 개선방안 – 요율체제 개편

- 권역간 요율조정

➤ 현행 보험요율 0.3%에서 0.081%로 대폭 인하 필요

< 금융권역별 예금보험요율 조정안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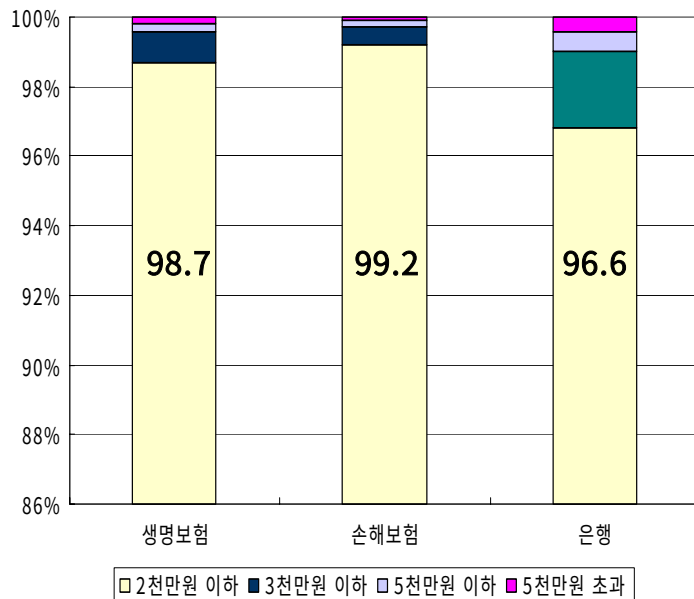
구분	손해율지수 (경험손해지수)	현행요율	조정요율
은행	18.81 (1.00)	0.10%	0.10%
보험회사	5.16 (0.27)	0.30%	0.081%
생명보험	6.33 (0.34)	0.30%	0.102%
손해보험	1.13 (0.06)	0.30%	0.018%

Ⅲ. 개선방안 – 보상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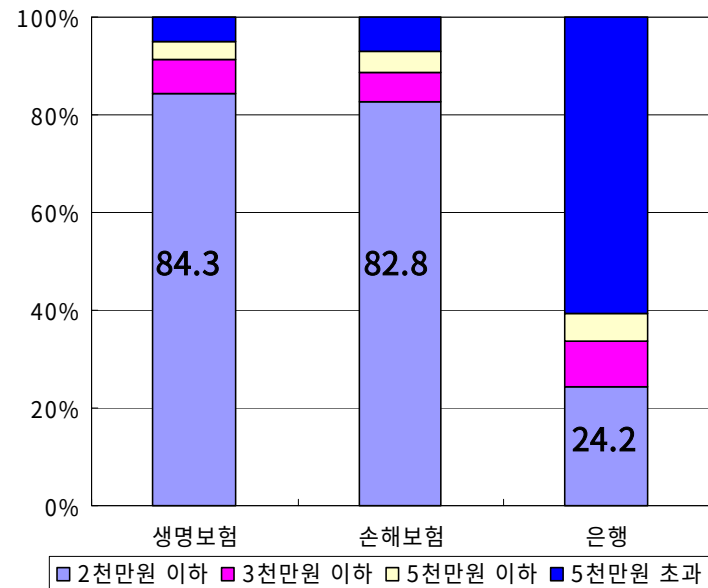
- 1인당 한도 하향조정 및 비율보상 추가

➤ 현재 환급금 수준의 보상한도는 완전보장 수준에 근접

< 금액계층별 소비자 구성비 >



< 해약환급금 분포 >



Ⅲ. 개선방안 – 보상한도

- 1인당 한도 하향조정 및 비율보상 추가

- 해약환급금 보상한도 축소 (2,000 만원 한도)
- 보험금기준 보상한도 확대 등으로 도덕적 해이 방지

< 보상한도 조정안 >



Ⅲ. 개선방안 – 기금운영

- 단일기금방식에서 복수기금방식으로의 전환 절실
 - 국내보험기금, 기금분리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
- 독립채산제 방식의 독립적 기금 운용 보장 필요
- 예금보험위원회의 구성시 금융시장 참여자의 비중 확대 바람직

Ⅲ. 개선방안 – 목표기금제 도입

- 목표기금제의 도입

➤ 시장상황 감안, 최소기금형 목표기금제 도입 적극 검토

< 시나리오별 적정 목표기금액 >

(단위:억원)			
구분	생명보험	손해보험	보험권전체
보험개발원 (1안)	5,400	2,424	7,824
보험개발원 (2안)	3,856	1,480	5,336
금융학회/예금보험공사	16,200	4,090	20,290

주) 1안 : 과거 구조조정 실적을 기초로 추정

2안 : 유동성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해약사태를 고려한 추정

IV. 결론

-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된 제도 개선 절실
- 각 금융권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로의 전환
- 보험계약자를 위한 예금보험제도의 개선
- 예금보험 위원회의 자율성 제고

FY 2006 보험산업발전 정책 세미나

감사합니다

June 8, 2006